도 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16. 8.

국 토 교 통 부
(도 로 운 영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도로법」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련 서식에 한문식 용어로 표기되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46호 서식 중 “승계인”를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함 (안 별지 제46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다.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건설인허가시스템(www.cperm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사항	허가번호	
	권리·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승계 사유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승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